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

2025. 3.
외교통일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4년 11월 25일, 김건 의원 등 15인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11월 26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제422회국회(임시회)

제1차 외교통일위원회(2025년 2월 26일)

상정 · 제안설명 · 검토보고 · 대체토론 · 소위원회부

제423회국회(임시회)

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(2025년 3월 6일)

상정 · 축조심사 · 의결(대안반영 폐기)

제423회국회(임시회)

제1차 외교통일위원회(2025년 3월 11일)

상정 · 소위심사보고 · 의결(대안반영폐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 김건 의원)

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영농(營農)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영농 정착을 위한 행정적 ·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영어(營漁) · 영림(營林)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정착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, 이는 농어촌지역의 어업 · 임업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이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영농 정착지원 외에 영어 · 영림 정착 지원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 및 어업 · 임업 종사자 증가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17조의3제1항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김사우)

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영농(營農) 정착지원 외에 영어(營漁) 및 영림(營林) 정착지원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게 경제적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직업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고, 다양한 지역과 환경에 적응할 기회도 제공하게 되며,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및

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입
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.

*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살
펴보면 영농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농운영비 지원에서 일부 어업과 임
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, 그 외에는 영농을
중심으로 정착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.(참고자료 2)

-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영어 및 영립 정착지원을 도입하기 위해서
는 북한이탈주민 중 어업 및 임업 희망자 실태조사, 어업과 임업에 특
화된 정착지원 방안 등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, 북한이탈주민의
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지역 및 대상자 선정에도 신중을 기할
필요가 있다고 봄

4. 대체토론의 요지

없음.

5. 소위원회 심사내용

(법안심사소위원장 김건)

한정애의원, 박충권의원, 김건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「북한
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은 이를

통합·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,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.

6. 찬반토론의 요지

없음.

7. 심사결과

대안반영폐기